

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0 선고 2021나5051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0.

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가소 144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10. 3.경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,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하는 전남 영광군 D 약 2,400평 및 같은 군 E 약 3,600평 각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김장배추 전부를 대금 4,700만 원(계약금 1,500만 원은 계약 당일, 중도금 1,000만 원은 2020. 10. 15., 잔금 2,200만 원은 2020. 10. 31.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)에 포전매수하기로 하는 포전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1,45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계약 이후로는 피고가 배추재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2020. 10. 중순경 배추에 벌레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, 이에 원고 대표이사 F와 피고 및 C 등 3인이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하고 배추는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, 그 후 피고는 제3자에게 배추를 처분하기까지 하였으므로,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1,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배추재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, 그로 인하여 2020. 10. 중순경 배추에 벌레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물론이고,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(피고가 제3자에게 배추를 처분하였다는 사정 및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),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배추재배 소홀 및 그로 인한 벌레 서식 확인 내지 원고 주장의 약정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기보다는 배추가격의 폭락 내지 원고의 중도금,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

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나상훈, 판사 오창민, 판사 조지환